제326회 임시회 2014. 1. 24.(금)

심사보고서

○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행정문화위원회

「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시 사 보 고 서

2014. 1. 24.(금) 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4년 1월 8일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1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1월 22일

- 제3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 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안전행정국장 강호동)

가. 제안이유

○ 「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」제정(2013.12.12.)에 따라 별정직 지방 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제부지사의 임용 자격기준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경제부지사 자격기준 중 근무상한연령 삭제 (안 제2조)
 - 부적격자 기준 중「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'근무상한연령 초과자' 삭제

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: 한철우)

○ 금번 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 제정된 대통령령인 「지방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」에 정무부지사는 근무상한 연령을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 조례 제2조 단서조항의 별정직 지 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제부지사의 임용 자격기준 중 근무상한 연령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"생략"
- 5. 토 론 요 지: "생략"
- 6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 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

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606 제출연월일: 2014년 1월 8일 제 출 자: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○ 「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」제정(2013.12.12.)에 따라 별정직 지방 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제부지사의 임용 자격기준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경제부지사 자격기준 중 근무상한연령 삭제 (안 제2조)
 - 부적격자 기준 중「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'근무상한연령 초과자' 삭제
- 3. 의안전문 : 붙 임
- 4. 신・구조문 대비표 : 붙 임
- **5. 관계법령 발췌** : 붙 임
- 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와 충 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 한연령을 초과한 자"를 "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"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자격기준) 부지사의 자격은 다음 각	제2조(자격기준)
호와 같다. 다만,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	
규정에 의한 <u>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</u>	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
되는 자와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	
임용등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	
<u>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한 자</u> 는 부지사로	
임용될 수 없다.	
1.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	1. (현행과 같음)
2.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	2. (현행과 같음)
3.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.군	3. (현행과 같음)
수.구청장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	
4. 기타 지방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	4. (현행과 같음)
가진 자	

관계 법령 발췌

□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(2013.12.12. 시행)

- 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 직공무원(이하 "지방별정직공무원"이라 한다)의 임용, 복무 및 능률에 관하여 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8조(근무상한연령)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. 다만, 정무부시장, 정무부지사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의 근무상한연령은 두지 아니한다.
 - ② 지방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하다.